

**특 집**

**4. 맺으며**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안들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 중에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도서관, 민간단체, 출판·서점계 등의 협력체제 구축, 충분한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독서는 고도의 문화적이고 내적성장을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독서의 문화적 실천은 자발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부는 독서활동에 대해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전 국민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내용을 검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책 읽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 찬 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1-1. 책 읽는 나라의 생각하는 백성**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하였다.(<사상계>, 통권 61호, 1958년 8월.) “모든 것의 밑이 뜻이요 모든 것의 끝이 뜻이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 뜻 깨달으면 얼[靈], 못 깨달으면 흙.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영원히 멩에를 메고 멩돌질을 하는 당나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생각하는 백성’인가, 아니면 개나 돼지, 멩에를 짊어지고 멩돌질이나 하고 있는 당나귀일 뿐인가.

21세기 우리나라에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책 읽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책 읽는 나라’의 시민은 생각하는 힘이 있는 시민, 생각하는 백성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다면 과연 우리 백성들이 행복해지는가.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 백성들이 배를 굶어서도 아니 되지만, 배만 불러서도 아니 된다.

지금 전 세계가 ‘책 읽는 나라(a nation of readers)’와 ‘책 안 읽는 나라’로 나누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서문화진흥법」을 만들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이어서 힘들게 독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를 ‘책 읽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책 안 읽는 나라’라는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겠다는 꿈을 갖고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책 읽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만한 것도 많지 않다.

## 1-2. 독서권

독서문화진흥법과 그 기본계획의 밑바탕에는 ‘독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독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독서권(讀書權)에 대한 인식이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 국민의 독서실태를 보면,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책쟁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독서율이 낮다고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독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4명 가운데 1명도 독서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4월 4일 <출판지식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할 때, 그 다섯 번째의 과제로 “국민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환경 조성”을 꼽았다. “지식기반시대에서 ‘독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체계를 확립하며, 지역·학교·직장에서의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에게 독서권이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확인하고 이 인식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1-3. 독서의 공공성

흔히 독서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냐고 말한다. 물론 독서는 개인적인 행위다. 하지만 개인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이다. ‘사슬에 묶인 책(chained book)’의 사슬을 풀어놓은 일이 근대혁명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근대혁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책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과 확대가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이 없었음에도 도서출판 정책, 독서정책, 도서관정책을 일관성 있게, 내실 있게, 꾸준히 추진하였다. 왜 그랬던가. 그것은 ‘공공적 독서(lecture public)’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공적 독서’ 즉 ‘공독서(公讀書)’라는 개념은 ‘공교육(公教育)’과 대등한 개념으로 국민에 대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보장하게 하고, 국가와 공공단체의 책무로서 의무를 지우는 개념이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도서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반원칙으로 개개인의 지적

특 집

자유 보장, 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사회인식과 정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Communication Design Institute, <도서관의 정보거점화에 관한 조사 연구>, 일본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2006년, 제2장 프랑스의 공공도서관 참조)

개인적 행위이자 사회적 행위인 독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질 독서문화 진흥 정책이나 독서운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공공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그것을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안찬수, 독서문화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의 방향, <창비어린이>, 2007년 가을호)

독서의 공공성(publicity)의 대척점에 독서상업주의가 있다. 최근 입시제도와 연계된 독서교육의 변화가 촉발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서상업주의’라 할 만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가 ‘책 읽는 사람’을 길러내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적 가치를 지닌 출판과 도서관과 독서를 진흥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도서관입비를 증액하는 것과 같은 지원책을 통해 ‘책 읽는 정부’ ‘책 읽는 기업’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가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코 사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학교·직장 등의 독서환경을 정비하고 가정-학교-사회 전반에 걸쳐 독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애써온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2-1. 기본법으로서의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다. 이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와 각 분야 전문가 자문,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및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기본계획으로 공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독서문화진흥법’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독서문화진흥법』과 그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과연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될까? 그 시행 결과 등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계획의 실효성과 그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별, 부문별, 지자체별 편차를 줄여나가기려는 노력은 어떻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기본계획의 4가지 정책과제 즉 ①독서환경 조성 ②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독서운동 전개 ④소외

계층 대상 독서운동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정책과제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각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시행해야 할 과제로 해석하여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독서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독서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만한 독서환경은 제공되고 있는가. 교도서와 소년원(training school)에 다니고 있는 보호소년들도 그러한가. 영유아와 노인은 어떠한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2. 독서문화진흥, 출판인쇄산업, 독서교육

이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기관별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겠다는 점이다.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리라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이 점에 있어서 최근 몇 해 동안 순천시, 경기도, 김해시, 서울시(정책부서가 만들어진 순서)가 도서관 정책 부서를 만들어 도서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개개 지방자치단체는 민선4기의 가장 뚜렷한 정책으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분장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 독서문화진흥 업무를 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정책→출판인쇄산업과의 1개 업무로 한정 지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 앞서 프랑스의 예를 들었기에 다시 프랑스의 예를 든다면, 프랑스는 문화통신부 내에 ‘도서및독서국(Direction du livre et de la lecture)’이 도서, 출판, 독서 전반을 조율·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도서및독서국에는 독서및지역도서관과, 문헌정책및관리과, 출판및도서경제과, 커뮤니케이션지원과를 두고 있다. 또한 이 도서및독서국이 작가, 번역가, 출판사, 도서관, 서점 및 관련 단체들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도서센터(Le Centre National du Livre)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에디시용, <http://www.kungree.com/kreye/kreye194.htm> 참조)

이런 예를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독서문화진흥이 결코 출판인쇄산업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서문화가 진흥되어 ‘책 읽는 인구’가 성장하지 않고는 출판인쇄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책 읽는 시민의 존재가 출판인쇄산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2-3. 책읽는도시, 책읽는마을 만들기

「도서관법」도 그러하지만, 「독서문화진흥법」도 그 기본계획의 실천을 하향식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 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여기서 시도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에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책무가 있음을 밝혀 놓았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와 같은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순천시와 김해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도서관 정책부서를 만들고 내실 있게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순천시는 ‘도서관도시’를 표방하며 2020년까지 도서관 확충 등의 세부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책읽는도시’를 도시의 발전전략으로 내세우고 10대 시책을 마련하고, ‘책읽는도시 김해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이 외에도 책읽는청주, 책읽는대전, 책읽는천안 등 다양한 양상으로 책읽는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광역시·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하향식만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독서문화 진흥의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간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부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고 뒤쳐진 지방자치단체를 부추겨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4. 내실 다지기와 외향적인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 정책이 전시행정의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외향적인 것이기보다는 내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기획하거나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시민의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은 결코 ‘행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내실이 바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①독서환경 조성 ②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독서운동 전개 ④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이라는 4가지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독서 진흥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적 또는 단기적인 운동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용훈·안찬수, 국민독서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5. 국립중앙도서관) 이는 기본적으로 독서 운동의 철학적 기반이 약하고, 추진 주체의 역량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도서관도시’ 순천이나 ‘책읽는도시’ 김해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 모두 주목하는 바이지만, 이 두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은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을 도서관 및 독서문화와 연관 지어놓았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행정과 재정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순천이나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독서에 대한 지자체별 관심과 재정형편의 차이, 독서운동을 주도하는 민간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3-1.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관협력 과제이자 우리나라를 '책 읽는 나라' 로 만들어가는 데 관건적인 과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과제 4가지만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을 마련할 때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를 원용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외국의 독서문화 진흥 활동이 기본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그 도서관들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기에 도서관 운영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거듭 눈여겨보아야 한다.

### 3-2. 북스타트

둘째로, 기본계획을 검토해보면 북스타트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고 있다. 북스타트(Bookstart)는 생후 한 살 미만의 아기들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여 부모와 아기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아기가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자랄 수 있게 하고, 젊은 부모들에게는 아기 양육의 경비와 책임 일부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적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다. 아기들을 잘 키워내는 일은 부모들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 북스타트는 바로 그 공동 책임을 적게나마 수행하고, 소득 차이나 지역 차이를 넘어 모든 아기와 가정에 평등한 문화적 교육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첫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 때 실행주체로 순수 민간 기구인 '북스타트코리아(Bookstart Korea)'가 만들어졌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1세 미만의 영아 930명이 DPT 3차 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들르는 시기에 무상으로 책을 선물 받았다. 연구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와 영아 150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의 효과를 진단하는 연구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광규주 교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한편 같은 해 9월에는 영국과 일본에서 북스타트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사들인 웬디 쿨링, 크리스 미드, 시라이 테츠, 사토 이즈미 씨 등이 참여한 국제심포지움이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현재 북스타트는 영국과 일본, 태국, 대만,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 5월말 현재 모두 57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북스타트의 전국적인 확대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들쭉날쭉한' 선거

특 집

법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략적이거나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는 2005년 3월 22일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지자체의 주민 대상 무료 문화행사를 금지하고, 선거일 1년 전부터는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단채장 명의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민의 문화향수권이 침해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부내 협의와 16개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선관위와 최종 합의하고, 지자체의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행사에 있어 현 선거법하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공시”(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훈령예규고시 63번, 공지사항 1993번)하였다.

이러한 ‘기본지침’이 필요했던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이 대부분 ‘진흥’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법률이기에 공립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주민대상 교양강좌, 공연·전시행사, 각종 축제,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개최,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강연회, 지역체육시설의 조성,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직장 체육대회 개최지원,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가족 생활체육캠프,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건강생활체조,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민속체육행사, 직장동호인클럽 지원, 지역 체육대회 개최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영상물 제작 등 교육 지원, 다큐멘터리·단편영화·예술영화·애니메이션 공모전 지원, 독립영화제·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개최, 찾아가는 영화관 등 무료영화 상영, 도서·출판 전시회, 청소년을 위한 순회 연극·음악회 등 개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축제 개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경연대회 개최,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 등등이 모두 “지자체의 주민 대상 무료 문화행사로 금지”될 지경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공연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을 관계 법령으로 예시하였다. 이에 대해 ‘책읽는사회’는 당시 문화관광부에 ①북스타트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②「도서관및독서진흥법」도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 관계 법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은 ①“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북스타트운동’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6조에 의거한 독서진흥활동에 해당”되며, ②“따라서 우리 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귀 재단의 ‘북스타트운동’은 2005년 3월 우리 부가 각 지자체에 공시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진흥 시책 기본지침」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지역진흥사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스타트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보건소 등은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문의하여 북스타트 도입을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인 지침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에 소속된 공공도서관 및 보건소 등은 다시 지방 단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여왔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의 기본지침을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2008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동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매년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3-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의 환경이 개선되고 장서가 확충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독서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책읽는사회’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에 걸쳐 ‘희망의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을 57개관을 구축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인수 학교뿐만 아니라 소인수 학교에서도, 도시의 학교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책읽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각 학교도서관은 더욱 개선된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더 풍부한 독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과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단지 교육과학기술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과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학교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서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계약직이나 기간제 사서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간과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책읽기의 즐거움에 ‘빠뜨릴’ 사람이 없다면 그 학교도서관을 도서관이라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3-4. 독서문화와 문화복지

「독서문화진흥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독서장애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마련되고 있는 기본계획에서는 ‘소외계층 대상 독서운동’을 주요한 과제로 설

## 특 집

정하고 독서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노인 독서활동 지원, 병영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교도소(소년원)의 독서활동 지원, 각종 복지시설의 독서활동 지원, 다문화가정의 독서활동 지원, 독서장애인 관련 제도 정비 등으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과제 설정이다. (독서)장애인, 노인, 군인, 수감자, 보호소년, 다문화가정 등등에 대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은 복지정책이자 문화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문화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워낙 긴급을 요하는 과제들이 많았기에 이러한 문화복지적 측면의 요구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정책을 펼쳐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계기로 이 부문에 대해 전사회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민관협력의 측면에서도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